하동군의회 공고 제2025 - 33호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9. 22.

하동군의회의장 강 대 선

1. 조례명: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동군 기본소득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팩스: 055-880-2939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3) e-mail: jina927@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동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하동군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시범사업 실시) ① 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시범사업 대상, 지급 금액 등의 선정·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 평가

5.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6.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경상남도,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